

##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 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제1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심급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계약(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 이내에 보장이 개시되는 계약을 말합니다.)인 경우 직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li> <li>▶ 손해배상의 경우: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li> </ul>
연간 하나의 사건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의 소송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항(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이송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종국 판결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금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제2조(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 1】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 2】『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 3】『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종국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4. 위 제 3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6. 특허법에 정한 특허권,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 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이 제기 되었거나 제기 될 수 있었던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정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전부 패소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9.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비용보험금은 아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	------

법률비용 보험금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1,000) 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 만원 한도

② 총 보상한도액이 설정된 경우에 회사가 보험기간을 통하여 지급하는 총 보상액은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액 확정결정서 등)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1】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소송가액	변호사 지급액
300만원 이하	30만원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30만원 + (소송가액 - 3백만원)×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00만원 + (소송가액 - 2천만원)×8%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40만원 + (소송가액 - 5천만원)×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740만원 + (소송가액 - 1억원)×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2%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40만원 + (소송가액 - 2억원)×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가액 - 5억원)×0.5%

※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소송가액	인지액
1,000만원 미만	소송가액×0.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가액×0.4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가액×0.40%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가액×0.35%

※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별표3】 『송달료규칙』에 정한 송달료**

심급	송달료
1심 소액	당사자수×5,200원×10
1심 단독/합의	당사자수×5,200원×15
항소심	당사자수×5,200원×12
상고심	당사자수×5,200원×8

※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